

의안번호	2212138
의 퇴 인	추경호 의원
회 답 일	2025. 7. 31.
추계번호	25F4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 중대 세액공제 및 상시근로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관련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조 4,379.4억 원, 2031년 1조 2,297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2조 2,532.4억 원 (연평균 2조 4,506.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관한 세수효과는 2027~2029년까지 발생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3년간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기본공제는 2027~2031년까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2027~2029년까지 세수효과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4)	157.9	163.9	170.1	—	—	491.9	164.0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8)							
상시근로자 (제1항)	14,120	28,282	40,588	26,463	12,297	121,750	24,350
육아휴직 복직자 (제5항)	101.5	96.8	92.2	—	—	290.5	96.8
합계	14,379.4	28,542.7	40,850.3	26,463	12,297	122,532.4	24,506.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2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제1항제1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조정

(단위 : 만 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현행)	1,450	1,550	800	400
→(개정안)	1,650	1,750	1,000	60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24년 세액공제 실적이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
 - 세액공제 규정이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9년까지 발생
- 상시근로자는 2023년 신고기준 공제실적의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과세자료 및 「사업체패널조사」 등의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취업자 수 증감을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동 제도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의 개별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400~1,550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1인당 공제액은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 기업규모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9~2023년 신고연도 기준 기업규모별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구분
 - 다만 소득세 공제액은 2024년 신고연도 기준 실적을 사용하고,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지역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19~2022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평균 비중이 2023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공제액의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 (2021년 기준)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사업체패널조사」 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일반법인 59.9%
 -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2024.10.)의 취업자 수 증감율 전망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가정
- 육아휴직 복귀자는 2023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법인세 실적을 추정한 후, 현행 규정의 공제율 변환율을 반영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 근무자의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소득세)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는 2024년 신고연도 기준 실적을 사용하고,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 (법인세) 2023년 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을 가정
 - 2024년의 감면실적은 인건비의 발생과 법인세 등 신고에 따른 세수효과 발생의 시차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후 복귀 근무자의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으로 인한 공제율 변화는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조사」의 기업규모별 평균임금에 기존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반영한 값과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의 차이만큼 발생한다고 가정
 - * 통합고용세액공제 전후 공제율 변화:
 - (이전) 육아휴직 복귀자 임금의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이후)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감면실적 및 추정치를 바탕으로 공제율 변환율 및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개정안의 공제율 변환율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현행 대비 26.2~41.7% 상승
 - 2027~2029년 세수효과는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후 복귀형태’ 자료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거나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와 중소기업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발생한 경우는 기업 규모별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개정연혁)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12.23. 신설된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발생한 기업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됨
 - 2015.12.15. 일부개정: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2016.12.20.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 2017.12.19. 일부개정: 중소기업의 평균 초과 임금증가율 20%로 상향조정
 - 2020.12.29. 일부개정: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로 대상을 제한
- (감면실적) 2019~2023년 신고기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19년 123.6억 원에서 2023년 226.9억 원으로 증가

[표 2]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20.2	36.1	42.5	53.4	66.9
법인세	중소기업	46.3	47.6	38.2	52.9	102.6
	중견기업	57.1	25.4	31.5	55.0	57.4
	소계	103.4	73.0	69.7	107.9	160.0
합계		123.6	109.1	112.2	161.3	226.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2024년 신고기준 공제실적을 추정 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2024년 신고기준 소득세 공제액은 실적치를 사용하고, 법인세 공제액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4년 전망치를 사용
 -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이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은 3.8%로, 귀속연도 기준으로 공제액은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표 3] 신고연도 기준 세수효과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 원)

	2024	2025	2026	2027	2028
명목임금 상승률 ¹⁾	2.5	2.9	3.2	3.9	3.8
소득세	44.1	101.9	105.1	109.2	113.3
법인세	99.0 ²⁾	45.4	46.9	48.7	50.6
합계	143.1	147.3	152.0	157.9	163.9

주: 1)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NABO 경제전망 (2025.3.)」 및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2024.10.)」

2)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57.9억 원, 2029년 170.1억 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491.9억 원(연평균 164.0억 원) 감소

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9년까지 발생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4)	157.9	163.9	170.1	491.9	164.0

나. 통합고용세액공제

- 1)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가)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하여 운용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

[표 5]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단위: 만 원)

			고용증대세제					통합고용세액공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 소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1,000	1,100	1,100	1,100	1,100	1,450	1,450
		수도권 밖	1,100	1,200	1,200	1,200	1,300	1,550	1,550
	일반 근로자	수도권 내	700	700	700	700	700	850	850
		수도권 밖	770	770	770	770	770	950	950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고용증대세제					통합고용세액공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 견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700	800	800	800	800	800	800
		수도권 밖	-	-	-	900	900	-	-
	일반 근로자	수도권 내	450	450	450	450	450	450	450
		수도권 밖	-	-	-	-	-	-	-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대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300	400	400	400	400	400	400
		수도권 밖	-	-	-	500	500	-	-
	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	-	-	-	-	-	-
		수도권 밖							
	공제기간		1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 (감면실적) 2019~2023년 신고기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9년 7,317억 원에서 2023년 2조 9,339억 원으로 증가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

[표 6]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 2019~2023년

(단위: 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세		1,972	4,283	6,336	8,898	11,191
법 인 세	중소기업	3,784	6,212	9,002	11,950	14,027
	중견기업	846	1,300	1,491	2,061	2,396
	대기업	714	1,017	1,131	1,257	1,725
	소계	5,345	8,529	11,625	15,268	18,148
합계		7,317	12,812	17,960	24,166	29,339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신고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방법

□ (추계방법 개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2023년 신고기준 실적을 발생연도별·기업규모별로 구분한 후, 제도변화 및 향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됨에 따라 현재 세법개정 이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만 추계에 활용 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으로 가정
 - 가령 2023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1년에 신고된 중소기업의 공제액과 2022년에 신고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 2023년에 신규 발생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이 모두 포함

[표 7]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수효과 발생연도
(단위: 억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1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₁	A ₂₁	A ₂₁		
	대기업	B ₂₁	B ₂₁			
'22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₂	A ₂₂	A ₂₂	
	대기업		B ₂₂	B ₂₂		
'23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₃	A ₂₃	A ₂₃
	대기업			B ₂₃	B ₂₃	
합계		A ₂₁ +B ₂₁	A ₂₁ +B ₂₁ +A ₂₂ +B ₂₂	A ₂₁ +A ₂₂ +B ₂₂ +A ₂₃ +B ₂₃	A ₂₂ +A ₂₃ +B ₂₃	A ₂₃

주: 1) 2021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20년 고용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임

2) A는 중소기업, B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이며, 아래첨자는 최초 공제가 발생한 신고연도를 의미

- 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제도변화와 취업자수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신규 공제액 추정
 - 세법개정에 따라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근로자 유형별(청년 등 상시근로자,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이 △20~31.8% 변동
 - 공제실적의 지역별·기업규모별·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국세청 제출자료 및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분하고, 2023년 실제 취업자수 증가율(1.2%)만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8]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로 세법개정 전후의 1인당 공제액 변동 추이
(단위: 만원, %)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등 상시근로자 ¹⁾	1,100→1,450 (31.8)	1,300→1,550 (19.2)	800→800 (0.0)	900→800 (△11.1)	400→400 (0.0)	500→400 (△20.0)
일반 상시근로자	700→850 (21.4)	770→950 (23.4)	450→450 (0.0)	450→450 (0.0)	—	—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2) ()안은 세법개정 전후의 1인당 공제액의 변동률(%)

- 향후 신규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2030년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발생한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신고연도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 t년도(신고기준) 신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의 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t+2년도 까지, 대기업은 t+1년도까지 다년간 공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3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실적 2조 9,339억 원 중 신규로 공제를 신청한 금액은 1조 1,194억 원 수준으로 추정

- 동 제도가 다년간 적용되므로 2023년 공제실적에 2021년과 2022년 공제를 신청한 금액과 2023년 신규 공제 신청액이 합산됨
- 2019년부터 공제실적을 바탕으로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공제중단 없이 중소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가정하여 연도별·기업규모별로 신규 발생한 세액공제 추계
- 2019~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규모별 실적을 바탕으로 연도별 신규 발생액을 추정

[표 9]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실적의 연도별 발생액 추정

(단위: 억 원)

			2022	2023	2024
2020년 신규 신청액	소득세		2,311		
	법인세	중소기업	2,428		
		중견기업	454		
		대기업			
	소계		5,193		
2021년 신규 신청액	소득세		2,053	2,053	
	법인세	중소기업	2,790	2,790	
		중견기업	192	192	
		대기업	828		
	소계		5,863	5,035	
2022년 신규 신청액	소득세		4,534	4,534	
	법인세	중소기업	6,732	6,732	
		중견기업	1,416	1,416	
		대기업	429	429	
	소계		13,111	13,111	
2023년 신규 신청액	소득세			4,604	
	법인세	중소기업		4,504	
		중견기업		789	
		대기업		1,297	
	소계			11,194	

	2022	2023	2024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		29,34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신고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공제액을 바탕으로 취업자 수 증가율 및 지역별·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율을 반영하면, 2024년 신규 공제액은 총 1조 2,449억 원으로 추정

○ (법인세)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법인세 공제액 추정치를 지역별·근로자 유형별로 구분

－ 지역별 구분은 2019~2022년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공제액의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연평균 비중이 2023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구분

*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중견기업 59.9, 대기업 100.0¹⁾

[표 10] 2023년 신규 법인세 공제액의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구분 추정치
(단위: 억 원, %)

2023년 신규 법인세 공제액(A)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지역별·근로자 유형별 추정치(A×B×C)
		구분	비중(B)	구분	비중(C)	
중소기업	4,504	수도권	70.0	청년 등	52.8	1,665
				일반	47.2	1,487
		비수도권	30.0	청년 등	52.8	714
				일반	47.2	638
중견기업	789	수도권	72.3	청년 등	59.9	342
				일반	40.1	229
		비수도권	27.7	청년 등	59.9	131
				일반	40.1	87
대기업	1,297	수도권	72.3	청년 등	100.0	938
		비수도권	27.7	청년 등	100.0	359
법인세 합계						6,590

○ (법인세) 2023년 기업규모별·지역별·근로자 유형별 신규 공제액 추정치 각각

1) 대기업의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미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공제율 변화 및 취업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면,
2024년 신규 법인세 공제액은 7,729억 원 수준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공제율 변화는 지역별·기업규모별·근로자 유형별로 △20~31.8%, 2023년 실제 취업자 수 증가율 1.2% 적용

[표 11] 2024년 신규 법인세 공제액 추정치

(단위: 억 원, %)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23년 공제액 추정치(A)	제도변화 (B)	'24년 공제액 추정치 [$\{A \times (1+B)\} \times 1.012$]	
중소기업	수도권	청년 등	1,665	31.8	2,222	5,707
		일반	1,487	21.4	1,828	
	비수도권	청년 등	714	19.2	861	
		일반	638	23.4	796	
중견기업	수도권	청년 등	342	0.0	346	783
		일반	229	0.0	231	
	비수도권	청년 등	131	△11.1	118	
		일반	87	0.0	88	
대기업	수도권	청년 등	938	0.0	949	1,239
	비수도권	청년 등	359	△20.0	290	
법인세 합계					7,729	

- (소득세)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소득세 공제액은 4,720억 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연도 기준 소득세 공제액 자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근로자 유형별 구분되지 않음
 - 개인 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중소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52.8%)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표 12] 2024년 소득세 공제액

(단위: 억 원, %)

	'24년 소득세 공제액		근로자 유형별		'24년 공제액 안분
			구분	비중	
소득세	수도권	2,650	청년 등	52.8	1,400
			일반	47.2	1,250
	비수도권	2,070	청년 등	52.8	1,093
			일반	47.2	977
합계		4,720			4,72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신규 공제액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2024.10.)를 반영하면, 향후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년 1조 4,120억 원에서 2029년 1조 4,191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귀속연도 기준 2026~2028년 까지 적용되므로,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2029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2028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2024.10.)은 0.2~0.4% 수준으로, 귀속연도 기준으로 공제액은 취업자 수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표 13] 신고연도 기준 신규 공제액 추정치: 2027~2029년

(단위: 억 원, %)

		2027	2028	2029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		0.4	0.3	0.2
소득세		5,120	5,136	5,147
법인세	중소기업	6,204	6,223	6,236
	중견기업	911	913	914
	대기업	1,885	1,890	1,894
	소계	9,000	9,026	9,044
합계		14,120	14,162	14,191

-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신규 공제액을 기업규모별 다년간 공제혜택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배분하면 2027년 1조 4,120억 원, 2031년 1조 2,297억 원 등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공제가 적용됨을 감안하여 신고연도 기준으로 연도별 세수효과를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에 포함

[표 14] 신고연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27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2,235	12,235	12,235		
	대기업	1,885	1,885			
	소계	14,120	14,120	12,235		
2028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2,272	12,272	12,272	
	대기업		1,890	1,890		

		2027	2028	2029	2030	2031
	소계		14,162	14,162	12,272	
2029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2,297	12,297	12,297
	대기업			1,894	1,894	
	소계			14,191	14,191	12,297
합계		14,120	28,282	40,588	26,463	12,297

2)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가)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제지원 항목과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통합되어 시행 중
 - (개정연혁)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8.12.24. 신설된 규정으로 2022.12.31.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2018.12.24. 신설: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 2020.12.29. 일부개정: 2022.12.31.까지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율 상향(중소 30%, 중견 15%)
 - 2022.12.31. 일부개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현행규정)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나) 추계방법

- (2024년 소득세 감면실적)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중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46.8억 원
- (2024년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감면실적 추정) 2023년 기업규모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2023년 명목임금 상승률 및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인한 공제액 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 기업규모별 감면실적 추정

- 2023년 감면실적에 2023년 명목임금 상승률(2.5%)을 적용하면, 2024년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추정치(제도변화 반영 전)는 52.8억 원 수준으로 추정
 - 단 2023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인한 공제액 변화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
-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 전후의 공제액 변화를 비율로써 반영하면, 2024년 세액공제 추정치는 70.5억 원 수준으로 추정
 - 기존 감면실적을 통한 추정치는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 이전의 제도를 바탕으로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므로,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라 감면율을 보정
 - * 시행이전: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임금의 30%, (중견기업) 15%
 - 시행이후: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조사」의 기업규모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2023년 기준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공제액을 추정하면, 중소기업은 1,030만 원, 중견기업은 635만 원으로 추정
 - * 중소기업: '23년 연평균 임금(3,432만 원)×기존 공제율(30%)
 - 중견기업: '23년 연평균 임금(4,236만 원)×기존 공제율(15%), 영리기업 평균값을 적용
 - 이를 바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으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면 2023년 법인세 세액공제액 추정치는 60억 원으로 추정
 - * 중소기업: (기존) 1,030만 원 → (현행) 1,300만 원(26.2% 증가)
 - 중견기업: (기존) 635만 원 → (현행) 900만 원(41.7% 증가)

[표 15] 신고연도 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액 추정치: 2023~2024년
(단위: 억 원)

	2023년 공제액(A)	2024년 공제액	
		개정 전 $B=A \times (1 + \text{명목임금상승률}^1)$	개정 후 $B=A \times (1 + \text{감면율 상향조정}^2)$
중소기업	27.1	27.8	35.1
중견기업	24.4	25.0	35.4
합계	51.5	52.8	70.5

주: 1) 귀속연도 기준 2023년 명목임금상승률 2.5% 적용

2) 시행 전 기존 공제율에서 시행 후 감면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26.2%, 중견기업 41.7% 증가율 반영

자료: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추정) 향후 세액공제액은 최근 3년('21~'23)간 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소득세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 증감율에 따라 향후 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수가 변동한다고 가정
- 최근 3년('21~'23)간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은 △4.7%

[표 16]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2019~2023년

(단위: 개, %)

	복귀형태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사업체	전체	496,873	516,236	515,710	436,191	463,305
	① 지속 근무	423,897	428,642	410,716	370,243	332,504
	② 단축 근무	14,650	13,408	14,652	19,860	36,006
	①+② 합계	438,547	442,050	425,368	390,103	368,510
전년대비 ①+② 합계 증감율			(0.80)	(△3.77)	(△8.29)	(△5.54)

자료: 고용노동부,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실태」, 각 연도

[표 17] 신고연도 기준 감면실적 추정치: 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70.9	67.6	64.4
	중견기업	30.6	29.2	27.8
합계		101.5	96.8	92.2

3) 상시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 및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조 4,221.5억 원, 2031년 1조 2,297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2조 2,040.5억 원(연평균 2조 4,408.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은 고용을 증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3년간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등에 대한 기본공제는 2027~2031년까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2027~2029년까지 세수효과 발생

[표 1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안 제29조의8)	상시근로자 (제1항) 육아휴직 복직자(제5항)	14,120	28,282	40,588	26,463	12,297	121,750	24,350
	합계	14,221.5	28,378.8	40,680.2	26,463	12,297	122,040.5	24,408.1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